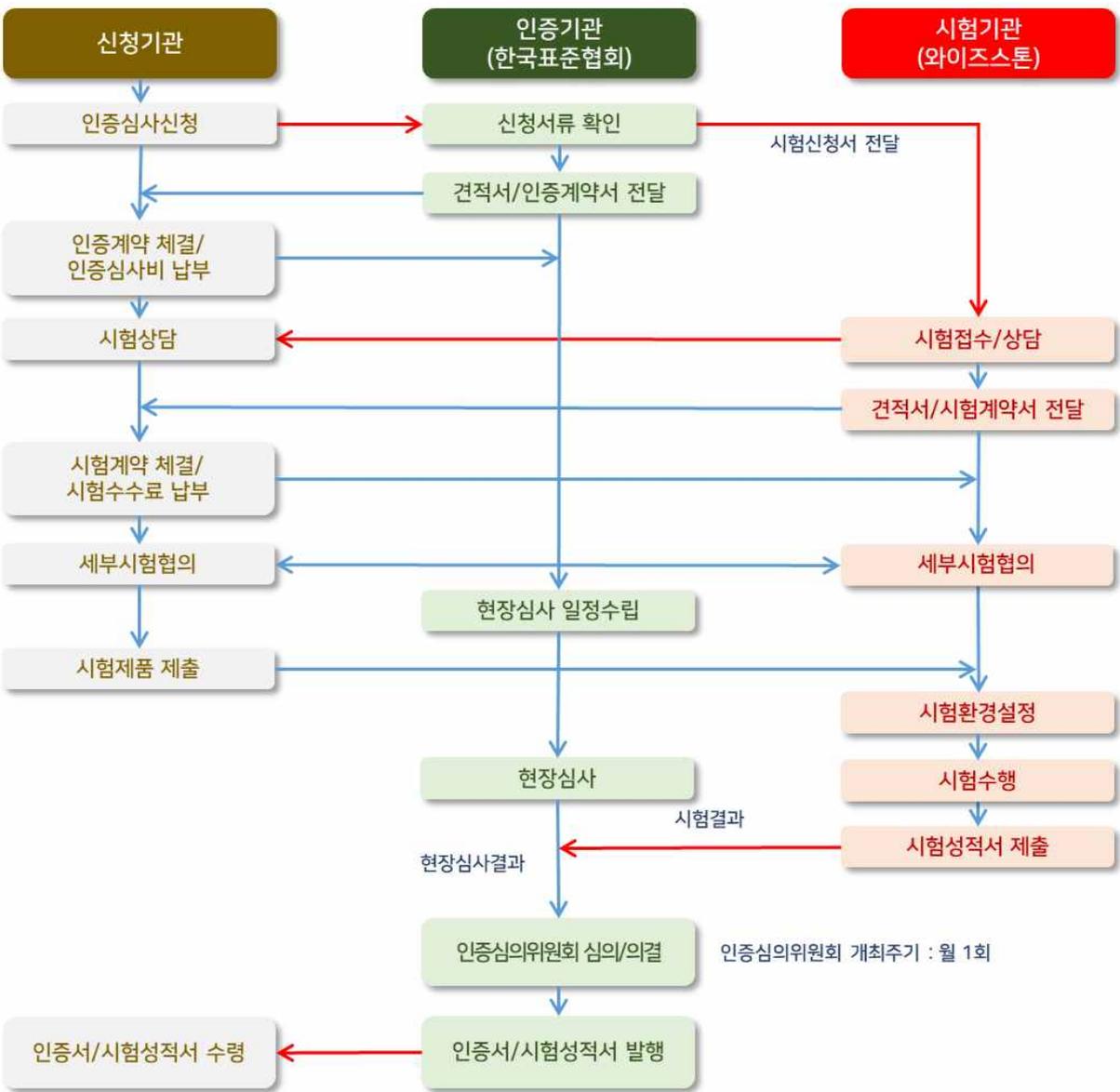


<h1 style="font-size: 2em; margin: 0;">KSA</h1>	<h1 style="font-size: 2em; margin: 0;">인 증 안 내 서</h1>
---	---

1 인증절차안내

1. 인증심사절차

한국표준협회(KSA)의 인증심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신청에서부터 인증서 발급까지의 기간은 시정조치를 포함하여 1.5개월 ~ 6개월의(세부 시험 일정에 따라 변동)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AI+ 인증 신청이 가능한 제품 기준

-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ICT 제품을 개발 및 제조하는 모든 조직(기업/기관/단체)은 AI+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ICT 하드웨어 제품의 경우, 한국표준무역분류 항목표의 세분류 품목과 신청 제품의 복수 모델 현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예 : AI 스피커 복수 모델 → 한국표준무역분류 세분류 7642에 모두 포함됨으로 확인 → Flagship(Mother) 모델과 인정 가능한 파생모델명을 확인하여 1개 제품으로 간주)
- ICT 하드웨어 제품의 파생모델 인정 기준
 - (1) 제품명 : Flagship(Mother) 모델과 동일한 것(제품명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고유명칭이며 회사명, 브랜드명, 상품명, 용량, 크기, 연식 및 기능 등의 조합으로 식별될 수 있음)
 - (2) 하드웨어 : Flagship(Mother) 모델과 비교하여 제품 성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비전기·비전자적인 기구가 변경된 것, 그리고 인공지능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자재 및 부품(예 : 마이크/카메라/온습도계 등 센서류, Wifi모듈 등 통신장치 혹은 연산장치/기억장치/메인보드 및 제어용 기판 등)의 변경이 없는 것
 - (3) 소프트웨어(혹은 펌웨어) : 파생모델의 인공지능 기능 및 일반 기능은 Flagship(Mother) 모델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Flagship(Mother) 모델과 비교하여 인공지능 기능을 구현한 알고리즘의 변경이 없는 것
 - (4) 외형 : Flagship(Mother) 모델과 비교하여 제품 성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외형의 변경(예 : 소재, 색상, 사이즈 및 외관 디자인 요소)만 있는 것
-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솔루션 패키지 등) 제품의 경우, 사용자(소비자) 관점을 기준으로 별도 협의하여 정합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의 인증품목명은 "AF403_인증대상 소프트웨어 품목"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3. 현장심사 유형

- 최초심사 : AI+ 인증을 신청한 인증조직에 대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S/W 및 H/W 제품에 대한 품질계획, 품질관리, 품질보증, 품질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인증조직 현장에서 확인하여 인증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제품시험이 필수로 실시됩니다.)
- 갱신심사 : 기존에 인증받은 S/W 및 H/W 제품에 대한 품질경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인증범위에 계속 적합한지 인증조직 현장에서 확인하여 인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2년 마다 실시합니다.(제품시험이 필수로 실시됩니다.)
- 특별심사 : 비정기적으로 인증승인, 인증유지 혹은 인증범위의 추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심사가 필요한 사유(3. 인증자격 유지요령 참조)가 발생되었을 때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제품시험이 함께 실시될 수 있습니다.

4. 인증수수료 안내

KSA의 인증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비용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심사비용의 적용시점으로부터 적어도 3개월 전에 모든 고객에게 그 내역을 통보합니다.

구 분		신청비	인증심사비	시험수수료	인증마크 사용료
최초심사 (최초인증)	대기업	50만원	300만원(1개 제품 기준, 3MD) + 50만원/추가제품당(0.5MD)	신청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험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라 정함	1~3제품:500만원 4~6제품:1,000만원 7제품 이상:1,500만원
	중견기업		200만원(1개 제품 기준, 2MD) + 50만원/추가제품당(0.5MD)		1~3제품:300만원 4~6제품:600만원 7제품 이상:800만원
	중소기업				1~3제품:200만원 4~6제품:400만원 7제품 이상:600만원
갱신심사 (2년 주기)	대기업	-	150만원(1개 제품 기준, 1.5MD) + 50만원/추가제품당(0.5MD)		1~3제품:500만원 4~6제품:1,000만원 7제품 이상:1,500만원
	중견기업	-	100만원(1개 제품 기준, 1MD) + 50만원/추가제품당(0.5MD)		1~3제품:300만원 4~6제품:600만원 7제품 이상:800만원
	중소기업	-			1~3제품:200만원 4~6제품:400만원 7제품 이상:600만원
특별심사	대기업	50만원	150만원(1개 제품 기준, 1.5MD) + 50만원/추가제품당(0.5MD)		1~3제품:500만원 4~6제품:1,000만원 7제품 이상:1,500만원
	중견기업		100만원(1개 제품 기준, 1MD) + 50만원/추가제품당(0.5MD)		1~3제품:300만원 4~6제품:600만원 7제품 이상:800만원
	중소기업				1~3제품:200만원 4~6제품:400만원 7제품 이상:600만원

※ 기업규모 구분

- 대기업(1,000억 이상), 중견기업(500억 이상, 1000억 미만), 중소기업(500억 미만)

※ 소요 일수 별 예상 시험 수수료

- 시험 수수료 = 시험 소요일수 * 90만원

- 시험 대상, 시험 범위, 시험 횟수, 시험 장소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 협의를 통하여 정함

소요 일수	8~9일	10~12일	13~15일	15일 이상
예상 수수료	720만원~810만원	900만원~1,080만원	1,170만원~1,350만원	별도 협의

※ 각 심사 시 KSA의 여비규정에 따라 심사부대비용이 추가되며 인증신청조직에서 부담합니다. 심사부대비용에는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VAT)는 별도입니다.

※ 갱신심사 시 신청비는 제외됩니다.

※ 가장 최근의 최초심사 혹은 갱신심사 종료일로부터 만 12개월 이내에, 신규제품 추가를 위한 특별심사(3. 인증자격 유지요령 > 5항 > 4) 참조)를 실시하는 경우, 신청비와 인증마크 사용료가 인증수수료에 포함됩니다.

5. 인증심사 일수 증가 및 감소 요인

- 복수사업장이 존재하여 인증심사 시 사업장 간 이동을 고려해야하는 경우, 심사일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규모 및 경영시스템 프로세스의 복잡도를 고려하여 심사일수가 증가 혹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대상 제품과 관련하여 품질, 환경, 안전 및 윤리 측면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심사일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 특별심사의 경우, 심사 목적과 심사대상 제품수에 따라 심사일수가 증가 혹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

2 인증등록을 위한 요구사항

1. 인증신청조직은 인공지능 적용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제조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구축하여 문서화하고 이에 따라 조직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시행·유지해야 합니다.
2. 조직을 지도한 컨설턴트는 심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3. 신청부터 인증서발행 기간은 통상 6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단, 세부 시험 일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인증등록 및 인증자격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구축 관련 문서의 조사 및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장소에 대한 출입허용, 관련 기록의 열람과 직원과의 면담을 허용해야 합니다.
5. 인증을 위한 시험 진행 시 시험 환경은 인증신청조직과 시험기관의 협의하에 결정하며, 인증신청조직은 시험 수행을 위하여 1인 이상의 시험 대상 소프트웨어 담당자를 지원하고, 시험 환경구축 및 시험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6. 다음과 같은 경우 인증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① 인증신청조직이 공식문서 및/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등록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 ② 현장심사 부적합 사항에 대한 해소(시정조치보고서 확인)가 90일 이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 ③ 인증심의위원회의 인증결정 결과, 인증불가로 판정된 경우
 - ④ 이해관계자의 클레임이나 사회적 물의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
 - ⑤ 인증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⑥ 조직 개편이나 시스템의 중대한 사항 또는 변경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 ⑦ 계약 또는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⑧ 인증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⑨ 인증신청 조직 해체,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인증등록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중단된 경우
 - ⑩ 기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7. 인증신청부터 인증등록 전까지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심각한 불만사항 또는 법규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KSA에 통보해야 합니다. (예. 시장으로부터 심각한 부정적 반응이 있는 경우 또는 제품리콜/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3 인증자격 유지요령

1. 인증조직은 인증등록을 위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규, KSA의 인증자격 유지요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 KSA는 차기 갱신심사 또는 특별심사 시 변경된 요구사항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인증시스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중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내에 관련 사실을 KSA에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 1) 법적, 상업적, 조직적 지위 또는 소유권
 - 2) 조직 및 경영진(예. 핵심 경영진, 의사결정자 또는 기술직 직원)
 - 3) 연락 주소 및 사업장
 - 4) 인증받은 경영시스템의 운영 범위
 - 5)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중대한 변경(예; 공정의 중대한 변경)
 - 6) 인증받은 소프트웨어의 메이저 버전 변경(단, 소프트웨어의 마이너 버전 변경이 제품 및 서비스의 인공지능 기능 성능 혹은 제품 품질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한다.)
- * 서비스의 인공지능 기능 성능 혹은 소프트웨어 품질에 끼치는 영향이 큰 소프트웨어 마이너 버전 변경의 예 : 버전변경은 2.0 -> 2.1이며,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분류 예측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학습 모델 알고리즘을 CNN에서 DNN으로 변경한 경우
4. 인증 후 인증서의 유효기간인 2년 주기로 갱신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5. KSA는 정기 갱신심사 외에도 단기예고 후에 특별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별심사가 실시되는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경영시스템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 ① 매뉴얼 및 관련 절차서의 전반적인 개정 및 폐지 등 인증된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핵심요소 또는 전반적인 변경
 - ② 소유주, 이사회, 인증된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핵심부서의 통폐합 등 조직 및 주요 경영진의 변경
 - ③ 인증된 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정관, 방침, 사업장, 핵심 설비,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 제조 프로세스 등의 중요 변경
 - 2) 소프트웨어의 메이저 버전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단, 소프트웨어의 마이너 버전 변경의 경우에도, 해당 버전 변경이 제품 및 서비스의 인공지능 기능 성능 혹은 소프트웨어 품질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3) 최초심사 및 갱신심사 시 발생한 부적합의 시정조치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
 - 4) 가장 최근의 최초심사 혹은 갱신심사 종료일로부터 만 12개월 이내에, 신규제품의 추가 인증을 희망하는 경우. 단, 만 12개월 초과 시점에는 최초심사를 실시한다.
 (예 1 : 대기업에서 2021.08.15. A제품 최초심사 종료 후 2022.06.15. B, C 제품 추가 신청 시, 특별심사 1.5MD에 추가되는 제품수 1개로 고려하여 0.5MD를 추가하여 총 2MD를 실시)
 (예 2 : 소기업에서 2021.05.10. A제품 최초심사 종료 후 2022.06.15. B제품 추가신청 시, 2MD의 최초심사를 실시)
 - 5) 법규위반, 사회적 물의, 고객 클레임 발생 등으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인증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 6) 기타 특별심사가 필요한 경우
6. ICT 하드웨어 제품의 기존 인증서에 새로운 파생모델의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파생모델 추가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파생모델 추가 신청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파생모델 추가 신청서의 파생모델 타당성 검토 결과가 모두 '예'인 경우)에는 특별심사 및 제품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파생모델을 기존 인증서에 추가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7. 인증관련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8. KSA와 인증조직 사이의 모든 인증관련서류는 보관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9. 인증신청 및 인증자격 유지과정에서의 불만, 이의를 KSA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인증된 시스템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고객 및 직원으로부터 접수된 불만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KSA의 요청시 해당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인증의 정지, 취소 및 축소

다음과 같은 경우 인증 효력이 정지되거나 인증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정지, 취소된 경우 인증획득 사실과 관련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고 KSA에 인증서 원본을 반납해야 합니다.

1. 인증효력의 정지

인증효력의 정지 시, 인증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 1) 인증조직이 공식적으로 인증효력정지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 2) 갱신심사 또는 특별심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 3) 인증유지를 위한 심사결과, 인증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조직이 없거나 인증시스템이 대부분 가동되지 않는 경우
- 4) 이해관계자의 클레임이나 사회적 물의에 의하여 인증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
- 5) 인증제도 및 인증요구사항의 변경에 대해 인증기업의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6) 인증표시의 오용으로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이후 1개월 이내 관련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 7)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8) 계약 또는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 9) 고객의 장기 휴업으로 인증 유지가 곤란한 경우. 단, 일시휴업 또는 인증유지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인증심사센터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10) 기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2. 인증취소

- 1) 상기 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120일이 지나도록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2) 고객이 공식적으로 인증서를 반납한 경우
- 3) 인증서 반납요청 공문 발송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불응한 경우
- 4) 인증범위에 포함된 제품의 개발, 생산 혹은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 5) 폐업, 합병, 부도, 도산 등에 따라 더 이상 시스템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6) 갱신심사기간을 초과한 경우

5 KSA의 책임과 의무

1. KSA의 직원 및 대리인은 인증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취득한 고객의 모든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며, 이미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거나 법 또는 해당 인정기관으로 요청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2. 고객 또는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심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3. 인증서비스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4년간 보관합니다.
4. KSA의 인증절차 또는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1~3개월의 예고기간을 두고 인증신청자 및 인증고객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6 시험 안내

1. AI+인증시험

- 1) AI+인증 심사를 위해 시험기관(와이즈스톤)에서 AI+인증시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2) AI+인증시험은 인증 대상에 대한 제품 품질 시험과 인공지능 시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는 시험 성적서로 발급됩니다.

2. 시험 협의

- 1) 신청기관은 인증접수 후 시험기관(와이즈스톤)에 방문하셔서 시험 일정과 장소, 인공지능 시험 항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 2) 제품 품질 시험은 사용자 매뉴얼을 기반으로 시험을 진행하므로 시험 협의 시 시험 대상과 함께 사용자 매뉴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3) 실제 시험을 지원할 담당자를 지정해주셔야 합니다. 시험 담당자는 시험 대상(SW 또는 제품)에 대해 기술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시험 비용

- 1) 시험 비용은 시험 소요일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시험 소요일은 아래 5가지 업무에 대한 소요 일수입니다.
 - 시험 분석/설계, 시험 수행, 성적서 및 절차서 작성, 성적서 검토 및 수정, 성적서 발행
- 2) 시험 소요일이 지연될 경우 추가 일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시험 비용처리 안내

- 1) 시험 비용은 시험 진행일 전까지 입금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2) 시험 성적서 발급 전까지 비용처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성적서 발급 및 인증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시험 진행

- 1) 신뢰성 있는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신청기관과 시험방법에 대해 합의합니다.
- 2) ISO/IEC 25023 및 ISO/IEC 25051을 기반으로 합의된 시험방법과 절차대로 시험을 진행합니다.
- 3) 시험 절차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증적자료(Raw Data)를 수집합니다.
- 4) 1차 시험을 수행한 후 결함 내역 및 시험 결과를 전달 드립니다. 신청기관에서는 발견된 결함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된 시험 대상(SW 또는 제품)에 대해 회귀 시

험을 진행한 후 성적서가 발행됩니다.

6. 시험 성적서 발급

- 1) 시험 성적서는 기본적으로 G4B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되며, 신청기관에서 1회에 한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성적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시험합의 시 발급 방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7 인증 FAQ

Q1. 현재 개발중인 AI제품을 신청하여 최초심사를 실시한 후, 개발완료 후 제품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A : 최초심사 종료일로 부터 만 6개월 이내에 제품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 6개월 초과 시점에는 최초심사 부터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Q2.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부적합 시정조치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A :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인증조직은 자체적으로 부적합 문제의 시정/봉쇄, 근본원인 분석, 시정조치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인증조직은 시정조치 활동 완료 후 시정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KS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시정조치보고서는 해당되는 최초심사, 갱신심사 혹은 특별심사 종료일로 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KSA으로 부터 승인되어야 합니다. 시정조치 승인이 90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증조직은 최초심사 부터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Q3. 제조현장이 복수인 경우, 모든 제조현장이 심사대상에 포함됩니까?

A : 복수의 제조현장에 대한 최초심사 및 갱신심사 시 샘플링 심사를 실시합니다. 제조현장 최소 샘플링 갯수는 1회 현장심사 당 1개입니다.

(샘플링 예 : 제조현장이 3곳인 경우, 최초심사 혹은 갱신심사 시 최소 1개 제조현장 심사 실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샘플링 개수 기준보다 많은 제조현장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AI+ 인증을 유지하면서 실시하는 갱신심사 시, 모든 제조현장이 주기적으로 균등하게 심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갱신심사 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최초심사 혹은 갱신심사에서 샘플링되지 않은 제조현장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해외 제조현장이 심사대상에 포함됩니까?

A : 해외 제조현장은 심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복수의 제조현장인 경우 샘플링 기준에 따라 해외 제조현장이 심사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5. 기존에 인증을 받은 후, 다른 제품을 추가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최초심사를 다

시 받아야합니까?

A : 기존 인증제품에 대한 가장 최근의 최초심사 혹은 갱신심사 종료일로 부터 만 12개월 이내에는 특별심사를 실시합니다. 만 12개월 초과 시점에는 최초심사를 실시합니다.

(예 1 : 대기업에서 2021.08.15. A제품 최초심사 종료 후 2022.06.15. B, C 제품 추가신청 시, 특별심사 1.5MD에 추가되는 제품수 1개로 고려하여 0.5MD를 추가하여 총 2MD를 실시합니다.)

(예 2 : 소기업에서 2021.05.10. A제품 최초심사 종료 후 2022.06.15. B제품 추가신청 시, 2MD의 최초심사를 실시합니다.)

Q6. 인증취소 후 같은 제품의 인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최초심사를 다시 받아야합니까?

A : 기존 인증제품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부터 만 6개월 이내에는 인증회복을 위한 갱신심사를 실시합니다. 만 6개월 초과 시점에는 최초심사를 실시합니다.

인증회복을 위한 갱신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새로 발급되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은 인증승인 일자이며, 만료일은 기존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에 만 2년을 더한 일자입니다.

Q7. 하드웨어(ICT 제품) 생산방식이 위탁생산(OEM 혹은 ODM)인 경우, 인증이 가능합니까?

A : 인증이 가능합니다. 단, 원칙적으로 하드웨어를 개발 및 생산하는 수탁자(제조현장)에 대한 현장심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제품시험 시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협조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Q8. AI기능(S/W)의 설계와 개발을 직접하지 않고 협력사에서 제공하는 AI기능을 클라우드 서비스 및 API와 같은 형태로 도입하여 자사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한 경우, 인증이 가능합니까?

A : 인증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경우, AI기능(S/W)을 제공하는 협력사에 대한 현장심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제품시험 시 필요한 경우 협력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